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(2021.6.23.시행)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심의회 심의대상 신설 및 중복된 조항 삭제(안 제5조제1항)
- 1,000분의 10이상의 대부요율 적용대상 추가(안 제28조제4항제7호)
-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및 수익매각 대상을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맞게 정비(안 제31조, 제40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32조)
-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상 조문 삭제(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, 제6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, 고용재난지역을 추가하였으며,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%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한 감액가능률을 100%로 확대하고, 대부료 100만원 초과 시 분납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조례상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명확화, 현행 행정규칙(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)에 맞게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과 수익매각 대상 정비,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문 삭제, 1000분의 10이상 대부요율 적용대상에 공무원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